

## “ 재정사업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의 현황과 정책과제\* 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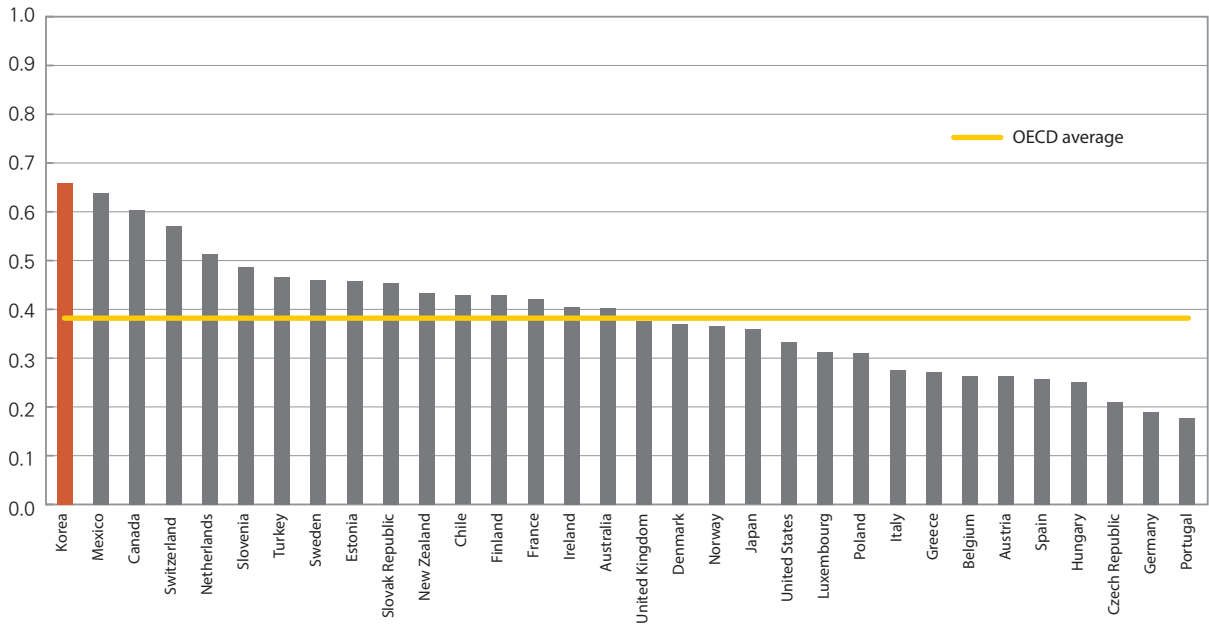
### I 배경 및 문제점

- 우리나라도 경제성장을 저하와 저출산·고령화에 따른 세수 확보의 어려움과 사회복지 지출 확대에 직면하여, 기존 재정사업의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정적 공간(fiscal space)을 창출하는 것이 당면과제로 부각되고 있음
  - 재정적자 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므로, 기존 사업을 대상으로 정책 우선순위와 효과성을 바탕으로 세출구조조정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 체제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
    - \*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GDP 대비 1.0%(2011) ⇨ 1.3%(2012) ⇨ 1.5%(2013) ⇨ 2.0%(2014)로 4년 연속 악화
    - \* 장기 경제성장률 전망(KDI, %): ('10년대) 3.8 → ('30년대) 1.9 → ('50년대) 1.1
    - \* 현 복지제도 유지 시 복지지출 비중(GDP 대비%): ('11) 9.8 → ('50) 21.6
  - 세수 확보 방안이 미흡한 가운데, 사회복지 영역에서의 정부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재정적자가 확대되는 상황임
  - 정책 우선순위와 사업의 효과성을 바탕으로 기존 재정사업에 대한 지속가능성이 높은 세출구조조정 방안 추진이 필요함
- 재정사업의 실효성 제고와 예산 배분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정성과관리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된 지 10여년이 경과하여 기존 제도를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할 시점이 되었음
  - 2000년대 중반에 중기재정운용계획, 하향식 자율예산편성제도, 재정성과관리제도, 디지털예산회계 시스템 등의 4대 재정개혁이 도입되었음

\* 본 보고서는 저자의 2015년도 기본연구과제 “재정사업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의 현황과 정책과제”의 내용을 요약·정리한 것임

- 제도 운영을 통해, 세출구조조정, 재정사업 운영 방식의 변화, 사업 부처의 문화 변화 등의 성과를 창출하였다고 평가됨
  - OECD가 2011/2012에 행한 재정성과관리(Performance Budgeting)에 대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, 한국이 주요 제도를 구비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연계하고 있는 국가로서 1위에 자리매김하고 있음

[그림 1] 2011/2012 OECD Survey on Performance Budgeting Practice Results



- 그러나 정부 내부에서는 평가의 타당성 확보, 평가 결과의 활용도, 평가와 예산과의 연계 방식, 개별 평가제도 간의 중복 또는 연계성 미흡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
  - 평가 단위와 평가 목적에 따라 다양한 평가제도가 분절화되고 중첩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제 발생
  - 평가 결과를 활용한 세출구조조정이 일정 부분 이루어지고 있으나, 세출구조조정 방식과 조정 폭의 실효성에 대한 점검 필요

- ●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재정사업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의 현황을 간략히 진단하고, 정책 수요와 재정여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정사업 성과관리 및 평가체제의 개선 방안을 논하고자 함

〈표 1〉 재정사업 운용 및 성과평가 체계

구분	〈사전〉	〈집행〉	〈사후〉
예산관리	예산편성 * 예산안	집행 총사업비 관리	결산 * 결산보고서
성과목표관리제도	성과계획서	집행점검	성과보고서
성과평가제도	예비타당성조사 * <u>간이</u> 예타	타당성 재조사	재정사업 자율평가 재정사업 심층평가 보조사업 운용평가

## II 조사 및 분석결과

### 가. 재정사업 성과평가제도 현황

- ● 우리나라 재정사업 성과평가제도는 신규 사업에 대한 사전적 타당성 평가제도, 집행과정에서의 관리제도, 포괄적 사후 평가제도, 특정 목적의 재정사업 평가제도로 구분할 수 있음
  - 사전적 타당성 평가와 집행과정에서의 관리제도는 1990년대 후반부터 SOC 사업을 중심으로 도입되어 운영되었으나, 최근에는 복지사업, 정보화 사업 등에 대해서도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확대
    -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는 일정 성과를 거두었으나,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이후에 필요한, 사업 부처의 자체적인 타당성 조사와 사업계획 내실화의 유인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 필요
    - 복지사업에 확대된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는 사업계획의 내실화에는 기여하고 있으나, 정형화하기 어려운 복지사업의 속성으로 인해 실제적인 예비타당성 조사의 목적 달성은 어려움
  - 집행과정에서의 관리제도는 SOC 사업을 대상으로 타당성 재조사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, 재정집행 상황 모니터링이 있음
    -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 시스템의 운영은 없다고 볼 수 있음
  - 사후평가제도로서는 2000년대 중반에 도입된 재정사업에 대한 포괄적 사후평가제도인, 재정성과 목표관리제도
    -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- 재정사업 심층평가제도가 있음

- 특정 목적의 평가제도로써, 기금운용 평가, 복권기금사업평가, 보조금사업운용평가, 지역발전사업평가 등이 있음
  - 기금운용평가 중 기금존치평가에는 기금으로 운영하는 개별 사업에 대한 평가 내용이 포함되어 포괄적인 사후평가제도와의 중복성이 있음
  - 복권기금사업평가에는 복권기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포괄적인 사후평가제도와의 중복성이 있음
  - 보조금사업운용평가는 평가의 초점이 보조금사업의 존치에 있기는 하지만, 평가 대상과 내용에서 중첩되는 부분이 있음
  - 지역발전사업평가도 평가 대상의 중복성으로 인해, 포괄적인 사후평가제도와의 중복성이 있음
- R&D 사업평가는 평가 주체와 대상이 별도로 설정되어 운영되는 평가임
  - 일반 재정사업 평가에서 분리되어 평가됨에 따라, 포괄적인 세출구조조정 방안 도출이 어려워지는 분절화의 문제를 내포

〈① 사전평가〉

구분	주 관	대 상	환 류
예비타당성 조사	평가단 (KDI, KISTEP 등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총사업비 500억원,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 건설, 정보화, R&amp;D 신규사업</li> <li>■ 중기지출 500억원 이상 복지, 보건, 교육, 노동 등 신규사업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B/C 1.0 이하, AHP 0.5 이하 사업의 예산·반영 보류</li> </ul>

〈② 집행과정평가〉

구분	주 관	대 상	환 류
타당성 재조사	평가단 (KDI, KISTEP 등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 (총사업비 500억원 이상) 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총사업비 20% 이상 증가</li> <li>- 수요예측치 30% 이상 감소</li> <li>- 예타 미이행 사업 등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총사업비 조정, 사업중단 등</li> <li>* 국회보고 필요</li> </ul>
PI보드	기재부 (부처 입력 → 기재부 확인·점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성과관리 대상 전 사업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자율평가 모니터링 실적 등에 반영</li> </ul>

〈③ 사후평가〉

구분	주 관	대 상	환 류
자율평가	부처 평가 → 기재부 확인점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성과목표관리 대상 사업 3년 주기(매년 1/3씩)</li> <li>■ 절대평가(상대평가 가미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단위사업 기준</li> <li>* 경상비, R&amp;D, 지특회계포괄 보조금 사업제외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5개 등급중 미흡이하 사업은 차차년도예산 10% 삭감</li> <li>* 평가결과 홈페이지 공개</li> </ul>
심층평가	기재부(연구용역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재정사업(군)에 대해 연간 8~10개 내외 수행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지출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안 마련 이행</li> </ul>
기금운용 평가	자산운용(평가단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매 1~2년 주기 평가, 존치평가는 매3년 시행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기금운영비 0.5%p 증감액, 경평에 반영</li> </ul>
	사업운영(자평활용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자평중 기금사업만 취합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자평과 동일하되, 자산운용평가 결과와 함께 5월말 국회제출</li> </ul>
보조사업 운영평가	기재부(평가단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존속여부 평가</li> <li>■ 자평중 보조금 세목 단위 기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예산편성에 환류</li> <li>* 예산안과 함께 국회제출</li> </ul>
R&D사업 평가	미래부(평가단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매년 1/3씩</li> <li>■ 세부사업 기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예산편성에 환류</li> </ul>
지역발전 사업평가	지역발전위(평가단)	지특회계 사업전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생활기반계정 배분시 환류</li> </ul>
	기재부	지자체 회계운영 성과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생활기반계정 배분시 환류</li> </ul>

## 나. 재정사업 성과평가제도의 주요 쟁점

### ● ● 재정사업평가제도와 관련된 주요 쟁점

#### ■ 평가제도의 목적 명확화 및 체계화 필요

- 재정사업의 객관적 성과평가를 통한 사업 개선이 목적인지, 성과정보에 근거한 재정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을 통한 세출구조조정이 목적인지 명확화 필요
- 현행 제도는 개별 단위사업이나 세부 사업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예산 삭감을 추진하는 체제이며, 분야 부문 수준에서의 분석에 근거한 우선순위 설정이나 거시적 재정여건을 고려한 세출구조조정 규모와 연계된 제도가 아님
- 현행 사업집행과정의 모니터링체제는 재정집행을 독려 중심의 모니터링 체제로서,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

■ 평가 중복 및 평가 제도 간의 연계성 미약

- 재정사업평가제도 간의 중복성과 연계성 미약

\* 엄밀한 의미에서의 중복은 없지만, 연계성 개선의 여지는 있음 ⇨ 포괄적 재정사업평가제도 vs. 특정 목적의 재정사업평가제도

-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제도와 타 중앙행정기관이 운영하는 제도 간의 중복성이 존재하므로 각 기관 간의 역할 명확화 필요

\* 국무조정실의 국정과제평가와 주요정책평가, 지역발전위의 지특회계사업 평가, 행안부 주관의 중앙정부와 지자체 합동평가 및 개별평가

■ 성과정보 활용을 위한 예결산과의 연계 강화 필요

- 예결산서에 성과정보 포함할 필요 검토

■ 부처의 역할 강화를 통한 범정부적 재정사업성과평가체계 구축 필요

- 2015년부터 재정사업자율평가 과정에서 부처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편이 이루어졌으나, 부처의 역할과 역량 강화 관련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음

- 재정사업 관련 정보는 사업 부처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, 사업에 대한 주인의식도 있으므로, 재정사업성과 평가 체계의 적절한 분권화가 필요하지만,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책무성 부여와 역량 강화가 뒷받침되어야 함

\* 부처가 통상적인 개별 재정사업 평가의 책임 부담, 기획재정부는 평가기준 설정 및 평가활동 모니터링과 범부처사업이나 특정 목적의 평가 수행

- 현재는 부처의 성과평가 전담 조직이 행정 처리 기능만 있을 뿐 실제적인 평가 조직이 아니므로, 부처의 재정 사업성과평가 역량 강화 조치 필요

\* 부처 내에 성과관리 및 평가 전담 조직과 인력의 명확화가 필요하며, 성과관리 및 평가전담 조직의 위상이 강화되어야 함

■ 집행단계의 성과관리 실효성 강화 필요

- 선택과 집중에 의한 재정사업 모니터링 과정 운영

\* 포괄적인 재정집행 관리 시스템운영은 현실성이 없으므로,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사업 모니터링 운영체제 마련 필요

■ 성과관리 인프라 구축 강화 필요

- 현재 디지털예산회계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으나, 사업 이력 추적 및 사업 성과관리 등의 분석 및 평가 목적에 부합한 정보가 적절하게 연계되어 있지 못함

- 사업 이력 관리 및 성과 분석 목적의 재정사업 성과평가 정보의 구축이 필요함

\* 예) 유사중복사업군 리스트 공개, 개별 사업 성과정보 온라인 공개 등을 통해 사업의 투명성과 사업관리에 대한 간접적 압력 기제 작동 필요

- 프로그램 예산구조가 부적절하게 설정된 경우 등으로 인해, 재정사업의 성과정보 생산 및 성과관리에 애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프로그램 예산구조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

\* 현재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기반이 되는 프로그램 예산구조가 부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 사례가 다수 있으므로,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, 업무 부담으로 인해 추진되고 있지 못함

- 본격적인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정여력 창출 목적의 전략적 지출분석 도입을 위한 성과목표관리체계와 평가 방법의 개선
  - 기존 국가재정운용 계획과 기존 평가제도와의 관계 및 정합성 검토 필요
  - 대폭적이고 다양한 세출구조조정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분석 단위를 부문이나 프로그램 수준으로 상향하고, 분석의 심도를 더할 필요가 있음
  - 현재와 같이 개별 단위사업이나 세부사업 중심의 평가체제로서는 정책의 우선순위나 정책 환경 변화와 같은 거시적 이슈를 평가 과정에 포함하기 어려움
- ● 재정사업 성과평가와 관련된 쟁점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
  - \* 원인 파악 없이 대중적 개선방안을 도출할 경우, 개선방안의 실효성 및 지속가능성 미약
  - 쟁점 발생 원인은 크게 아래와 같이 구분 가능
    - 평가제도의 중복 ⇨ 정부 부처 내의 총괄기능 분산
    - 의미 있는 평가결과 도출의 어려움 ⇨ 부처의 성과정보 관리 체제 미약, 부처의 평가 역량 부족, 부처와 기재부의 협업체제 미약, 부처의 평가 수행 유인 미약, 고위 의사결정자의 관심 및 참여 부족, 프로그램 예산구조의 개선 필요 등
    - 예결산과 성과정보의 연계 미흡 ⇨ 예산실과 재정관리국의 협업 필요, 성과정보의 유용성 개선 필요 등

### Ⅲ 정책제언

#### 〈제안1〉 평가제도의 목적 명확화에 따른 평가제도 틀 개혁

- 세출구조조정에 초점을 둔 재정성과평가체계 도입
  - 세출구조조정에 초점을 둔 상대평가와 사업 성과에 대한 절대적 평가가 혼재된 현행 평가체계를 세출구조조정에 초점을 둔 평가체제로 개편
    - \* 재정여건을 반영하고, 재정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시행 10여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포괄적인 세출구조조정을 위한 평가제도로 자리매김
  - 재정사업자율평가를 중앙행정기관의 세출구조조정을 위한 평가체제로 전환하여, 매년 중앙행정기관의 모든 재정사업 평가
    - \* 현행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는 중앙행정기관 사업을 매년 1/3씩 평가함으로 인해, 기관단위의 포괄적 세출구조조정 목적을 달성하고 있지 못함

\*\* 운영 절차 : 기획재정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재정사업자율평가 지침과 세출구조조정 목표치(예를 들어, 총사업예산의 3%)를 중앙 행정기관에 제시 → 각 중앙행정기관은 모든 재정사업(단위사업)을 대상으로 자율평가를 실시하고, 자율평가결과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 → 기획재정부는 중앙행정기관의 평가 결과와 세출구조조정안에 대한 메타평가 실시

■ 분야와 부문을 분석 대상으로 하는 전략적 지출검토제도 도입

- 현재의 재정사업평가제도는 단위사업이나 세부사업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개별 사업의 지출구조조정에 초점을 두고 있음
- 이로 인해 세출구조조정 금액으로 볼 때는 그 영향력이 제한적임
- 분야나 부문 단위로 기존 재정사업을 재검토하여 세출구조조정안을 도출하는 과정을 운영할 경우, 보다 의미 있는 규모의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음
- \* 2000년대 후반의 국제금융위기 이후, 일부 OECD 국가들은 대규모의 세출구조조정을 위한 지출검토 과정을 운영하였으며, 그 이후 정례화시키는 경향이 있음

〈제안2〉 성과정보 활용을 위한 예결산과의 연계 강화 필요

■ (현황) 예결산서와 성과계획서와 보고서는 별도의 문서로 국회에 제출되며,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가 가장 명시적으로 예산편성에 반영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포함되어 있음

- \* 미흡사업에 대한 원칙적 10% 예산 삭감
- 예결산서와 성과계획서/보고서를 통합하게 되면 예결산서의 내용이 충실해지고 사업부처의 부담이 경감 되고, 대외적으로 정보의 가독성을 높인다는 효과가 있으나, 실질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지는 불확실함

■ (개선방안)

- 예결산서에 DBrain에 포함된 성과정보를 포함함으로써 예결산서의 정보 충실화
- \* 예결산서의 간소한 형식에 성과정보를 연계시키게 되면, 기존 성과계획서/보고서의 내용을 잃게 되는 부작용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
- ⇒ 예산사업 설명서에 DBrain에 담긴 성과정보를 포함하고, 성과계획서/보고서는 현행과 같이 별도 제출
- ⇒ 부처의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도출시, 세출구조조정안을 포함하도록 하여 평가 결과와 예산편성과의 연계 강화. 세출구조조정의 크기는 거시적 재정여건 및 기타 사항을 고려하여 매년 변경 가능

### 〈제안3〉 집행단계의 성과관리 강화

- (현황 및 검토 사항) 예산집행을 중심의 재정집행 관리는 이루어지고 있으나, 실제 집행 과정의 모니터링을 통한 기획재정부와 사업부처 간의 의미 있는 상호작용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음
- (개선방안)
  - (1안) 중점관리대상 사업 모니터링 체제로 전환  
중점 관리대상 사업에 대해서, 예산집행률과 분기별 이정표를 설정  
⇨ 부처 내부에서 의무적으로 분기 점검회의를 수행하고 특이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정관리협의회에 상정 ⇨ 반기별 사업 부처와 기획재정부의 협의회 운영  
\* 협의회를 통해 도출된 애로사항은 기획재정부가 사업 부처와 협업하여 적극적으로 해소 방안을 모색  
\* 중점관리대상 사업은 과거 평가 결과와 예산집행률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선정
  - (2안) 예산집행률 모니터링 및 사후 조사분석체제로 전환·DBrain을 통한 예산집행률 모니터링을 포괄적으로 분기별로 수행하여, 특이사항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분기별 현장 점검을 통해 문제점 파악 및 개선 사항 도출

### 〈제안4〉 성과관리 인프라 구축 강화 방안

- (현황)
  - 재정사업 성과평가 정보가 분산되어 이력관리가 미약하며, 재정사업 성과평가제도 운영주체 간의 정보 공유 및 의사소통 미약
  - 재정사업 성과평가 역량이 정부 전체적으로 미약
  - 재정사업 성과평가에 대한 고위 의사결정자의 관심 미약
- (개선 방안)
  - 프로그램 예산체계의 전반적 점검 추진  
\* 프로그램 예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프로그램 예산구조 자체의 문제 개선을 통해, 성과정보 생산 및 성과평가의 실효성 제고
  - 재정사업 성과평가 정보 DB 구축을 통해 성과정보의 이력 관리 및 환류 강화  
⇨ DB를 활용하여 유사중복사업 관리 대상 사업군 도출 및 사후관리 추진  
⇨ 유사중복사업군 리스트 및 관련 권고사항을 온라인으로 공개하고, 개선상황 업데이트  
⇨ DB를 활용하여 평가제도 간 정보 공유

- 재정사업 평가유관기관 협의회의 어젠더에 따라, 관련 사업 부처나 관계기관 담당자까지 참석 대상 확대
  - \* 분기별 어젠더 정례화를 추진하여, 확대 참석 대상자 사전 공지
- 범정부적 재정사업 성과평가 정책 수립을 통한 사업부처의 역량과 책무성 강화
  - ① 부처 자체 사업 평가를 의무화하고, 평가관련 제도 운영 및 역량확보의 책임을 부처의 차관에게 부여하고, 각 부처 내(재정사업)성과관리담당관을 지명하고 권한 및 책임 부여
  - ② 기획재정부는 매년 각 부처로부터 해당 연도의 평가계획서(평가대상사업, 평가자, 평가방법, 평가쟁점)를 제출받아, 피드백을 주고 평가과정 모니터링
    - \* 캐나다, 미국, 호주 등의 국가에서는 성과평가와 관련한 부처의 책무성 확보를 위해, 재정사업 성과평가와 관련된 부처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한 규정을 가지고 있음
  - ③ 재정사업심층평가도 부처로 분권화하는 방안 검토 필요
    - \* 평가대상 사업군 중 대다수의 사업을 담당하는 부처를 책임부처로 지명하여, 평가 작업반 운영의 책임을 부여하고, 기획재정부는 평가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 또는 평가위원(steering committee) 구성에 관여
- 고위 의사결정자의 책무성 제고를 위해, 재정사업 성과평가체계의 적절한 수립과 운영에 관한 평가 결과를 고위 의사결정자 성과급에 반영
  - \* 행자부의 행정역량 평가 항목에 포함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
  - \* 캐나다의 MAF가 대표적인 사례이며, 영국에서도 각 기관의 역량 점검을 위해 Capability Review를 실행하고 있음

## 〈제안5〉 성과평가 환류 강화

- (현황)
  -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는 예산편성지침에 미흡사업에 대한 원칙적 10% 예산삭감을 적용하여 환류되고 있음
  - 재정사업 심층평가와 다른 특정 목적의 평가제도의 평가 결과는 기획재정부의 정책적 의지에 따라 환류의 강도가 달라지는 경향이 있음
  - 평가 결과에 근거한 페널티는 있으나, 적극적인 유인책은 미약
- (개선 방안)
  - 평가제도 체계가 세출구조조정에 초점을 둔 체제로 변화할 경우, 세출구조조정 목표치에 근거한 부처의 세출 구조조정안이 차년도 예산편성에 환류되는 체제를 갖추게 됨
  - 현행 체계의 기본틀이 유지되는 경우,
    - ①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경우는, 부처의 자율평가에 근거한 세출구조조정안 제출을 의무화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환류

- ② 재정사업 심층평가는 평가제도 운영 과정에 부처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여, 부처가 구조조정안을 도출하고 추진하도록 유도
- ③ 존치 평가의 성격이 강한 평가제도의 평가 결과는, 평가 결과의 공개와 사후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후속 조치 실행 압박 강화

#### - 긍정적 유인 제공

- \* 평가제도를 적절히 운영하고 환류하는 부처에 대해서는 경상비 증액, 평가 부담 완화 및 공개적 기관 포상 등을 통해 긍정적 유인을 제공할 수 있음

## IV 기대효과

- ● 어려워지는 재정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사업 성과평가체계 구축으로 재정의 유지가능성에 기여
  - 기존 재정사업평가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본격적인 세출구조조정 중심의 평가체제 마련을 통해, 정책 우선 순위나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적극적인 재정여력 창출을 위한 제도로 탈바꿈하는 효과가 있음
  - 거시적 재정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재정사업평가 체제 수립 가능
- ●지속가능하고 실효성이 높은 재정사업 평가체제로 개선
  - 기존 재정사업평가체제는 예산당국의 중앙집권적 체제로서, 제도 도입 초기에는 적절한 운영체제였을 수 있으나, 지속가능성과 실효성 측면에서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음
  - 사업 부처의 책무성과 역량을 강화하는 범정부적인 재정사업평가 정책을 수립함으로써, 적절히 분권화된 재정사업평가 체제 수립 가능
  - 부처 사업 개선을 위한 적절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, 부처와 예산당국 간의 협업 체제를 구축할 수 있음
    - 사업부처와 예산당국 간의 관계가 예산만을 매개로 운영될 경우, 생산적인 정보 공유와 사업개선이 이루어지기 어렵지만,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부처의 사업개선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채널을 마련함으로써, 협업관계 형성 가능

| 작성자 |

박노욱 /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
(044-414-2267)

| 참고문헌 |

- 박노욱, 「지속가능한 세출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정책과제」, 『재정포럼』 208호, 한국조세재정연구원, 2013. 10.
- 박노욱, 「세출구조조정의 실효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전략적 분석 도입 방안」, 국가재정운용계획 공청회 발표자료, 2015. 5.
- 박노욱·오영민·원종학, 「재정성과관리제도 운영의 성과 분석과 정책과제」, 연구보고서 15-18, 한국조세재정연구원, 2015.